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8-76호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2월 05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다자녀 정의를 셋째 이상 자녀에서 둘째 이상 자녀로 변경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양육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민·관 협치체계 구축을 위한 시장과 민간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대책위원회 위원 구성을 확대 정비하는 등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인구정책과 인구교육에 대한 정의 및 다자녀 가정 용어정의 변경

(안 제2조)

나. 저출산대책위원회 구성위원 확대 정비 (안 제9조)

다. 인구교육에 관한 규정 (안 제14조)

라. 저출산정책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마.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부칙)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4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e-mail로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23, 팩스 032-440-8764, 이메일 kbboss7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발췌사항 1부.(붙임1)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붙임2)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여 수립·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말한다.
3. “인구교육”이란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 시민에게 인식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제4호(중전의 제2호) 중 “셋째이상”을 “둘째이상”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1명을 포함한 15명”을 “2명을 포함한 20명”으로, “시장 이 되고”를 “시장과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된 자 1명이 공동으로 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저출산대책 업무 담당 국장”을 “여성가족국장, 일자리경제본부장, 도시균형계획국장, 교육협력 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다만,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4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인구교육)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인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인구교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상별로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
2. 무자녀 가정 및 한자녀 부모
3. 학생 및 청소년
4. 학교 및 관련기관 등 교직원
5. 공공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
6. 그 밖에 필요한 대상별 교육 또는 교육희망자

③ 제2항에 따른 인구교육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및 관련협회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홍보 등) 시장은 저출산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물품 배포 등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신설>	2.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여 수립·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말한다.
<신설>	3. “인구교육”이란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 시민에게 인식시키는 것을 말한다.
2. "다자녀가정"이란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4. ----- 둘째이상 ----- -----.
제9조(저출산대책위원회) ① (생략)	제9조(저출산대책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	② ----- 2명을 포함한 20명 ----- ----- 시장과 위 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된

다.

③ 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시의 저출산대책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서 신설>

1. ~ 4. (생략)

④ (생략)

<신설>

자 1명이 공동으로 하고--.

③ -----
- 여성가족국장, 일자리경제본부장, 도시균형계획국장, 교육협력담당관-----
----. 다만,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인구교육)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인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인구교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상별로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
2. 무자녀 가정 및 한자녀 부모
3. 학생 및 청소년
4. 학교 및 관련기관 등 교직원
5. 공공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
6. 그 밖에 필요한 대상별 교육 또는 교육희망자

③ 제2항에 따른 인구교육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

제14조 (생 략)

<신 설>

문교육기관 및 관련협회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제16조(홍보 등) 시장은 저출산정
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
산의 범위내에서 홍보물품 배포
등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관련 법령 발췌 사항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인구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2(인구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조례안 제9조(저출산대책위원회)

-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된 자 1명이 공동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조례안 제14조(인구교육)

-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인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인구교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상별로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1.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
 - 2. 무자녀 가정 및 한자녀 부모
 - 3. 학생 및 청소년
 - 4. 학교 및 관련기관 등 교직원
 - 5. 공공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
 - 6. 그 밖에 필요한 대상별 교육 또는 교육희망자

○ 조례안 제16조(홍보 등) 시장은 저출산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홍보물품 배포 등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58,250	42,800	48,000	53,000	58,000
저출산대책위원회	2,800	2,800	3,000	3,000	3,000
인구교육	30,450	25,000	30,000	35,000	40,000
홍보	25,000	15,000	15,000	15,000	15,000

여성가족국 출산보육과장 이영순